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9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 추가	3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9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5. 7.

(3) 회 부 일 : 2025. 5.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 추가(차규근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 대상: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u>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u>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등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 대상: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u>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u>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차규근의원안 2025. 5. 7. 발의(의안번호 1039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7)

☐ 개정안은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거래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5조의5¹⁾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저한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를 하거나 혹은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는 등의 경우 그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는 특정법인에 무상지원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재화·용역 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적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가령 자녀소유의 특정법인에 부모 등 자녀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등으로 특정법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녀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실질적인 증여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이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과 거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²⁾하고 있어 지배주주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 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

본인과 특정법인이 거래한 경우는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가령, 부모가 51%, 자녀가 49% 지분을 보유한 특정법인을 가정한다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부모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에 따른 당해 법인의 이익 중 49%는 자녀가 향유하게 되는데 이때 거래의 당사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되므로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에 지배주주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개정안은 특정법인을 통한 우회적 증여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배주주가 본인 소유의 법인에 증여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자녀, 친족 등이 그 증여 이익을 향유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둘째, 현행 법문상 특정법인과 지배주주가 거래 시 증여의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할 수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와 과세관청은 동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본인도 특

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³⁾ 등을 고려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문언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